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제명 변경에 따른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장정희 의원)

의안 번호	22-147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11. .

발 의 자 : 고병준, 권영숙, 남해석,
이상원, 장정희, 차해영,
채우진, 최은하, 한선미,
홍지광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제명이 변경됨(2022. 7. 7. 공포·시행)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

- (대상조례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등 4개
- (변경내용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
→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· 훈령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개정 현황

규 칙 명	시행 시기	개정 사유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	2020. 1. 1.	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」의 개정사항을 반영
↓		↓
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	2020. 7. 9.	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」 전부개정(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)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안 시달에 따라 위임사항 정비
↓		↓
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	2022. 7. 7.	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라 우리 구 규칙 상 인용 범조문 및 제명을 변경함

나. 기타

- 1) 일괄개정조례안: 붙임
- 2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3) 입법예고 : 2022. 11. 18. ~ 11. 23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제명 변경에 따른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3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4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4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

현행	개정안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1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.
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준용) 광고료 부과·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따른다.</p>	<p>제9조(준용)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.</p>
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회계 관리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6조(회계 관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.</p>

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.

**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」
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: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: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건설교통국 도로개선과 이효진
연 락 처	02-3153-9782